

대학혁신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

제정 2019. 4. 23
개정 2019. 7. 29
개정 2019. 11. 1
개정 2019. 12. 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부 「대학혁신지원사업(이하 “혁신지원사업”.)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항공과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)에 설치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제위원회 및 사업전담 조직의 운영과 혁신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: 2019.12.1)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혁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본 대학 행정부서와 위원회 및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적용한다.

제3조(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) ① 혁신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)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교무위원급 위원으로 구성되며, 위원장은 부총장이 된다. 단,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2명 이내의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.

1. 대학의 비전과 혁신지원사업 목표의 정합성 추진 (개정: 2019.12.1)
2. 혁신지원사업 정책방향 및 우선순위 결정 (개정: 2019.12.1)
3. 사업비 집행 기준 수립 및 부적정 집행 대응 (개정: 2019.12.1)
4. 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(개정: 2019.12.1)
5. 그 밖에 혁신지원사업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 심의 (개정: 2019.12.1)
6. (삭제: 2019.12.1)
7. (삭제: 2019.12.1)

제4조(대학혁신지원사업팀) ① 혁신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해 기획처 내에 대학혁신지원사업팀(이하 “사업팀”)을 둔다. (개정: 2019.12.1)

② 사업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. (개정: 2019.12.1)

1. 사업의 총괄적인 수행·관리·지원 (신설: 2019.12.1)
2.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별 예산 책정 (신설: 2019.12.1)
3. 사업집행 및 성과지표 모니터링 (신설: 2019.12.1)
4.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(신설: 2019.12.1)
5.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와 확산 (신설: 2019.12.1)

- 6.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, 재정적 제도의 정비 (신설: 2019.12.1)
- 7.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보고, 연차·중간·종합보고서 작성 (신설: 2019.12.1)
- 8. 기타 혁신지원사업 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항 (신설: 2019.12.1)

③(삭제: 2019.12.1)

④(삭제: 2019.12.1)

제5조(대학혁신지원사업팀 운영자문위원회) ① 혁신지원사업팀 운영자문을 위해 ‘대학혁신지원사업팀 운영자문위원회(이하 “사업팀 운영자문위원회”)를 둔다. (신설: 2019.12.1)

② 사업팀 운영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학내 구성원으로 구성되며,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된다. (신설: 2019.12.1)

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(신설: 2019.12.1)

④ 사업팀 운영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획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. (신설: 2019.12.1)

- 1.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혁신지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(신설: 2019.12.1)
- 2. 정책방향에 따른 중점과제 설정 및 실행에 관한 사항 (신설: 2019.12.1)
- 3. 그 밖의 혁신지원사업 추진과 관련된 기타 주요 사항 (신설: 2019.12.1)

제6조(사업비 편성 및 집행 관리) ① 혁신지원사업의 사업비 편성 및 집행관리는 기획처 기획예산팀과 행정처 재무회계팀이 수행한다. (개정: 2019.11.1)

② 사업비 점검 및 관리 체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.

- 1. 사업추진부서와 사업비 관리부서의 분리
- 2.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
- 3. 교비회계 내 별도 계정으로 관리

제7조(사업비 변경) ① 모든 사업비는 혁신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하며, 집행 방법 및 사업비 변경에 대한 세부 사항은 「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」에 따른다. (개정: 2019.12.1)

② 「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」에서 정의하지 않은 내용은 대학의 예산 및 회계관리 기준,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대학 자체 기준을 준용한다. (개정: 2019.12.1)

③ (삭제: 2019.12.1)

제8조(성과평가) ① 혁신지원사업의 사업추진 성과는 내부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를 통해 평가한다.

② 혁신지원사업 성과점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통한 평가(컨설팅 자문 포함)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9조(모니터링) ① 사업팀은 사업추진(수행)부서가 수행하는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

터링을 한다. (개정: 2019.12.1)

②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관리 부서는 사업비 집행의 합목적성을 수시로 모니터링한다.

③ 모니터링 결과 사업비 부적정 집행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
제10조(자체평가) ① 성과평가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체평가위원회(이하 “평가위원회”)를 둔다.

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평가에 전문성이 있는 학내 전임교원으로 임명한다. 단, 자체평가의 투명성·민주성 확보를 위해 학교 경영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, 직원 및 재학생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. (개정: 2019.12.1)

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(개정: 2019.12.1)

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.

1. 자체평가계획 수립 및 정기·수시 평가 실시
2. 사업별 자율성과지표 목표값 달성도 점검 (개정: 2019.12.1)
3. 세부 사업별 달성도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자문 (개정: 2019.12.1)
4. 사업성과지표 점검 및 설정 (개정: 2019.12.1)
5. 평가결과에 기반한 환류체계 구축 (개정: 2019.12.1)
6. 사업의 효과성, 사업 성과 창출 요소 발굴 및 확산 (개정: 2019.12.1)
7. 기타 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와 관련된 중요 사항 (개정: 2019.12.1)
8. (삭제: 2019.12.1)

제11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규정을 준용하되,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4월 23일부터 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7월 29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업팀의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